

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

※ 대면 교육으로 진행 (장기미종사자 교육에 한하여 온라인교육)
 교육기관 사항 등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(변경 시 사전안내)

| 기관명 | 교육과정 | 교육 인원 | 신청기간 | 교육기간 | 교육 일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호서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(☎ 560-8089) | 원장일반직무 (심화) | 250 | 2023.4.17.~ 2023.5.14. | 6.22(목) ~ 6.27(화) | 4일 | |
| | 장기미종사자 | 200 | 2023.4.17.~ 2023.4.24. | 5.15(월) ~ 5.19(금) | 5일 | |
| | | 200 | 2023.9.11.~ 2023.9.18. | 10.16(월) ~ 10.20(금) | 5일 | |
| | | 200 | 2023.11.13.~ 2023.11.20. | 12.11(월) ~ 12.15(금) | 5일 | |
| | | 200 | 2023.12.11.~ 2023.12.18. | 1.15(월) ~ 1.19(금) | 5일 | 2024년 |
| | | 200 | 2024.1.15.~ 2024.1.22. | 2.12(월) ~ 2.16(금) | 5일 | 2024년 |
| | 원장사전직무 | 250 | 2023.4.17.~ 2023.5.14. | 8.20(일) ~ 10.22(일) <매주 일> | 8일 | |
| | 1급 승급 | 200 | 2023.4.17.~ 2023.5.14. | 6.30(금) ~ 7.22(토) <매주 금·토> | 8일 | |
| | | 200 | 2023.4.17.~ 2023.5.14. | 7.28(금) ~ 8.5(토) | 8일 | |
| | 2급 승급 | ★ 2급 승급교육은 교육수요 부족으로, 2022년부터 격년(2년)에 한번 교육 진행 ★ 2022년에 2급 승급교육과정 진행으로 2급 승급교육 대상자는 2024년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|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(☎ 660-1406) | 일반직무 보육교사(기본) | 160 | 2023.4.17.~ 2023.5.14. | 7.17(월) ~ 7.20(목) | 4일 | |
| | 원장사전직무 | 120 | 2023.4.17.~ 2023.5.14. | 6.30(금) ~ 7.22(토) <매주 금·토> | 8일 | |
| | 1급 승급 | 120 | 2023.4.17.~ 2023.5.14. | 7.17(월) ~ 7.27(목) <월~목> | 8일 | |
|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(☎ 580-2448) | 원장사전직무 | 200 | 2023.4.17.~ 2023.5.14. | 7.29(토) ~ 8.7(월) | 8일 | |
| | 1급 승급 | 200 | 2023.4.17.~ 2023.5.14. | 7.29(토) ~ 8.7(월) | 8일 | |

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 안내

- 교육기간 : 2023. 5월 ~ 11월 ※ 장기미종사자 2024년 2월까지
 - 교육대상 : 도내 현직 보육교직원
 - ※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.
 - ※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
 - 신청기간 : 2023. 4. 17. ~ 5. 14. ※ 장기미종사자 기간 다름
 - ※ 관내 보육교직원 접수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 타 시도 보육교직원 접수 가능
(타 시도 보육교직원은 환급 불가)
 - 교육과정 및 비용
 - 1) 직무교육(40시간) : 일반직무과정(보육교사, 원장), 장기미종사자
 - 2) 승급교육(80시간) : 1급, 2급
 - ※ 1급 승급: 2급 자격 취득 후 만2년 경력 필수 / 2급 승급: 3급 자격 취득 후 만 1년 경력 필수
 - 3) 원장사전직무교육(80시간)
 - 교육비용
 - ▣ 직무교육(8만원/1인) :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
 - ▣ 승급교육(14만원/1인) :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 - ↳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교육비용 자부담
 - ▣ 장기미종사자교육 : 8만원(자부담)
 - ▣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: 16만원(자부담)
 - 지원방법 :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교육비 선납 후 이수 시 교육기관에서 환급
 - 지원제외
 - 타 시도 소재, 충남 미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한 자
 -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
 - 현직 보육교직원이 아닌 자
- ⇒ 교육신청 및 교육비 지원 시, 모두 현직 보육교직원이어야 함

○ 교육 신청방법

- 어린이집 원장 : 「어린이집지원시스템」 담당교사의 교육신청 가능
- 보육교직원 : 「보육인력 국가자격포탈」 현직(원장 포함), 비현직 교육신청 가능

[교육신청 방법]

● 교육신청

- 「어린이집지원시스템」 : 어린이집 원장(현직의 경우)
 - ※ 교육통합 > 교육신청 > 교육정보입력 > 검색 > 교육선택 > 보육교사조회 > 교사선택 > 확인 > 해당교사선택 > 개인정보동의 > 교육신청
- 「보육인력 국가자격포탈」 : 개인 신청(현직, 비현직 신청 가능)
 - ※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탈(<http://chrd.childcare.go.kr>)에 회원 가입후 직접 신청
 - (교육통합관리(개인) > 교육신청 > 교육정보입력 > 검색 > 교육선택 > 상세보기 > 교육신청)

[교육대상자 요건]

| 교육구분 |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비고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직무 교육 | 일반 직무 교육 | 보육 교사 |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| 40시간 | 매3년마다 |
| | | 원장 |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| 40시간 | 매3년마다 |
| | | 장기 미종사자 교육 |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취득자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| 특별 직무 교육 | 영아 보육 |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| | 장애아 보육 |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| | 방과후 보육 |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승급 교육 | 2급 승급 교육 |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| | 1급 승급 교육 |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| 원장 사전 직무 교육 | - |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「별표1」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(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)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
[교육신청 시 유의사항]

-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, 신청기한 내 교육정원이 충족될 경우 신청 조기 마감
- 대기선정·대기승인자는 교육대상자가 아니며, 기 선정·기 승인된 교육대상자가 교육포기 시 대기 순번대로 교육대상자로 확정('승인'상태)됨
- 연락두절로 교육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신청 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(개인정보 반드시 수정)
- 승급교육 신청시 비현직일 경우 교육기관(대학)이 속한 해당 시·군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제출
 - ※ 유치원 근무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유치원 경력증명서 제출
(현직일 경우 어린이집이 속한 해당 시·군에, 비현직일 경우 교육기관이 속한 해당 시·군에 제출)
- 교육대상자가 교육비 납부 후 교육개시일 이전 교육 포기 시 교육비 전액 반환, 교육개시일 이후 교육포기 시에는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음
- 과목별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
 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·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·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%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,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(제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사망신고서, 진단서 등 사유서)를 제출
-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인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교육 이수 점수에 통과하여야 인정됨.
-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는 “아동학대·안전관리교육”을 받고 교육면제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시 해당 교육과목 면제(이수대상자 연계로 누락자에 한함)